



오늘의 새싹을 키우는 교육의 뿌리
초등교사노동조합

날 짜 : 2026.08.20.(목)
발 신 : 초등교사노동조합
수 신 : 교육담당기자

위원장 강석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134 14층 초등교사노동조합

[보도자료] 초등교사노조, 9월 정기국회 내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추진

초등교사노조, 9월 정기국회 내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추진

-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책임에서 보호해야 - 교원 면책을 전제로 사전 판단 기준도 강화
- '아님 말고'식 신고가 곧바로 수사로 이어져서는 안 돼 - 정서적 학대 판단기준 법률에 명문화
- 교육활동 관련 법적 대응은 국가가 책임 - 관할청 의무고발·소송지원 강화 추진

1.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강석조, 이하 초등교사노조)은 9월 정기국회 내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초등교사노조는 먼저 법률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사후에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인정받는 데 그치지 않고, 정서적 학대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해 신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대 해당 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불필요한 조사·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걸러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주체를 교사 개인에서 국가와 관할청으로 옮기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2.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은 이어져 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등은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가 아니면 말고', '법이 그러니 일단 신고

한다’는 식의 신고만으로도 교사가 조사와 수사 절차에 들어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한 번의 문제 제기일 수 있지만, 교사에게는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출석 조사와 법률 대응, 장기간의 절차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발생한다. 수개월 뒤 불기소나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

초등교사노조가 이번 개정을 통해 바꾸려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사후에 무혐의를 받도록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불필요한 조사·수사로 넘어가는 경우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다.

3. 국회에도 관련 법안은 계속 발의됐지만, 2026년 8월 현재 정서적 학대와 관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5건은 모두 소관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가운데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지도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찬성 의견을 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동 보호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거나,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후에는 “입법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이러한 반대 논리까지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해 온 정서적 학대 판단요소를 법률 자체에 명문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판단 기준 명문화안은 특정 직군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모든 행위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판단기준을 법률에 마련하는 방식이다.

판단 요소에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 경위 ▲행위의 방법과 표현의 강도, 지속기간·빈도·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단계, 장애 특성 및 건강상태 ▲아동에게 발생한 피해 또는 위협의 정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교육·보호·양육·지도를 목적으로 한 경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필요성·상당성 등이 포함된다.

현재 법원이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판단기준을 신고와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적어두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 보호의 범위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불필요한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초등교사노조의 입장이다.

4.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도 함께 추진한다.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주체를 교사 개인에서 국가와 관할청으로 옮기는 것이다.

초등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심의·의결한 일정 사안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의무화 ▲교육활동 관련 조사·수사·민·형사·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청의 법률지원 ▲소송비용의 관할청 선부담 및 침해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학교장의 민원 보호조치 이행 및 관할청의 점검·시정 요구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받은 기관의 고려 의무 등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고발과 피해교원 보호제도가 존재하지만 상당 부분이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 작동 여부에 편차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현행 「교원지위법」은 관할청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량규정에 머물러 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처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보호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국가와 관할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5.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아동학대가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는 한순간이지만, 수사가 시작된 교사는 무혐의가 나오기까지 자신의 직업과 삶을 걸고 버텨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면 사후에 면책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애초에 불필요한 수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법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활동은 개인의 취향이나 감정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로 부여한 직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은 분명히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국회 의원실 및 법제실과의 협의를 거쳐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여야 공동발의를 추진하고,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정당한 민원과 신고의 권리는 보장하되, 반복적·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에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이번 입법의 취지다.

2026. 8. 20.

초등교사노동조합